

FTA 동향

FTA TRADE REPORT

관세청, 2021 국제 원산지 세미나 개최

사상 최단기(299일) 무역 1조 달러 돌파

관세청,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면세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례 선보여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계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ISSUE IN ISSUE ❶ 2021년에 새로 조정된 수출입 시 법정검험
검사 품목 리스트는?

ISSUE IN ISSUE ❷ 양국간 협력 증진의 장이 될 수 있는 인도의
디지털화

ISSUE IN ISSUE ❸ 멕시코 조세청, 물류증빙(Carta Porte)제도
신규 도입



관세청, 2021 국제 원산지 세미나 개최

Mega FTA! RCEP의 성공적 이행과 활용방안 모색

관세청은 11월 10일에 수출입기업, RCEP 회원국, 주한 대사관, 유관기관 등 국내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관세청은 FTA 원산지 이행 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FTA 현안을 선정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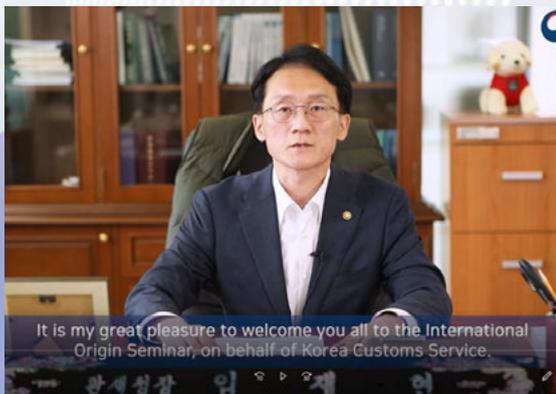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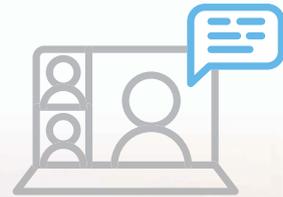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올해 현안은 2022년 초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무역협정인 RCEP으로 선정했고,

‘RCEP의 성공적 이행과 활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원산지 이행제도 및 추진방향, 뉴질랜드의 CPTPP 이행경험 및 RCEP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세청, 학계 등 국내 전문가가 한국의 원산지 정책, 역내 다자누적 활용방안, 관세차별의 원산지 결정 및 검증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한 토론 등 다양한 RCEP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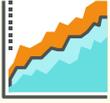
임재현 관세청장은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역내 재료 활용 확대, 단일 원산지 기준과 절차 간소화 등으로 동아시아 무역 활성화와 기업의 활용 기회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RCEP에 대한 큰 관심으로 수출입기업, 유관기관, 해외 관계자 등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관세청은 참여하지 못한 수출입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 공지사항에 세미나 자료를 등재하여 공유하였다.

RCEP 발효일이 중국, 일본 등 10개국은 2022년 1월 1일, 한국은 2월 1일로 확정됨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에게 더 많은 정보제공과 활용 지원을 위해 설명회와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사상 최단기(299일) 무역 1조 달러 돌파

코로나19 영향 극복하며 사상 최대 무역규모 전망

관세청(청장 임재현)·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0월 26일 13시 53분, 우리나라 무역액이 1조 달러¹⁾를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무역은 '11~'14년, '17~'19년 총 7회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무역 침체로 1조 달러 이하(9,801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올해 들어 곧바로 1조 달러²⁾를 회복하였다.

특히, 올해는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무역통계 집계 이래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쾌거는 '18년 달성한 최단 기간('18년 11월 16일, 320일)을 21일 앞당겨 299일 만에 달성한 것으로 우리 무역의 기초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수출액도 지난 10월 20일 5,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년 연속 5,000억 달러 행진을 이어나갔다.

10월 중 연간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돌파한 만큼, '21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역대 무역 1조 달러 달성 시점]

(단위: 억 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연간 무역액	10,796	10,678	10,752	10,982	10,522	11,401	10,456	10,000+α
돌파 일자	12.5일 (339일)	12.10일 (345일)	12.6일 (340일)	11.28일 (332일)	12.14일 (348일)	11.16일 (320일)	12.16일 (350일)	10.26일 (299일)

1) 수출액 5,122억 달러 + 수입액 4,878억 달러

2) 1조 달러는 자동차 5천만 대에 달하는 금액, 자동차만으로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2,470만 대)를 수출하고 같은 양을 수입한 것과 같은 규모



관세청,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면세업계 위기극복 지원’사례 선보여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부제: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여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면세 산업을 지원한 혁신사례를 선보였다.

혁신박람회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전시관과 확장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통해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와 ‘면세점-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등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번 사례는 관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들의 면세점 기반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면세품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도입을 통해 국내외 면세점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혁신사례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협업과 신기술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우리기업을 지원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과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박람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의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확산함과 동시에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www.innoexpo.kr)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개막식과 회의 등 주요행사를 온라인 방송과 연계한 생방송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전시관은 ▲안전한 한국 ▲함께하는 한국 ▲편리한 한국 ▲혁신 방방곡곡(지역사회 혁신, 주민 참여혁신 등) ▲실패 박람회로 구성되었다.

행사의 현장감과 관람객의 흥미를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도 함께 운영하였다.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하였다.

관세청은 '12년부터 우리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세관과 연관된 통관분쟁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도 지난해 같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설명하였다.

설명회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8개국의 관세관 13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제도 및 관세정책의 변화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병행하였다.

* 미국(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유럽연합(벨기에), 중국(북경, 청도, 대련, 홍콩, 상해),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또한, 올해는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의 주한 대사관을 초청했으며, 해당 국가의 무역 환경, 수출 기업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해외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등 관계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급-수요 간 불균형에 따른 물류대란 등으로 통관 지연을 비롯한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 국가별 발표 주제]

구분	국가	발표주제
관세관	미국	강제노동 등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유럽연합 통관제도 변화
	중국	중국 세관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관리방법 개정 등 주요 통관제도 변화
	일본	최근 일본의 관세행정 동향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중심으로
	베트남	베트남 최근 관세제도 주요 변화
	인도	인도의 수출지원 제도 변화와 주요 통관 어려움 사례
	인도네시아	인니 코로나19 대응 및 한-인니 관세협력 추진현황
	태국	태국 세율 및 품목분류 적용 유의 사항
주한 대사관	중국	스마트 세관, 스마트 국경, 스마트 연결
	러시아	러시아 관세청 2021 : 관세행정 최신동향



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2월 1일(수) 대전 유성호텔에서 2021년 하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 등이 제출한 총 31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등을 시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기존 대회와는 달리 참가 부문을 개인에서 팀으로 바꾸고 발표주제에 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진행방식 도입을 통해 직원 간 소통과 협업, 창의적 분석환경 조성, 분석 과정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원산지 관리 취약 해외공급자 분석, 실패연구 사례 등의 분석 사례가 발표돼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최우수상'은 원산지관리 취약 해외공급자를 심도있게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 3과 4팀 김민주 행정관 외 2인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미국산 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불충족 위험 분석사례를 발표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과 유럽연합산 독과점 해외 명품 의류를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 1과 1팀이 수상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급증*한 국가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사후검증 요청 건수) '19년 254사 → '20년 783사

도움이 필요한 수출기업은 관할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더 자세한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장,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21일 미국, 싱가포르, 호주, 영국 등 CPTPP 주요 회원국과 관련국 통상전문가를 초청하여 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중국(9월 16일)과 대만(9월 22일)의 연이은 CPTPP 가입신청 등 CPTPP를 둘러싼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전문가 간담회(9월 30일), 제조업(10월 7일)/신산업(10월 14일) 주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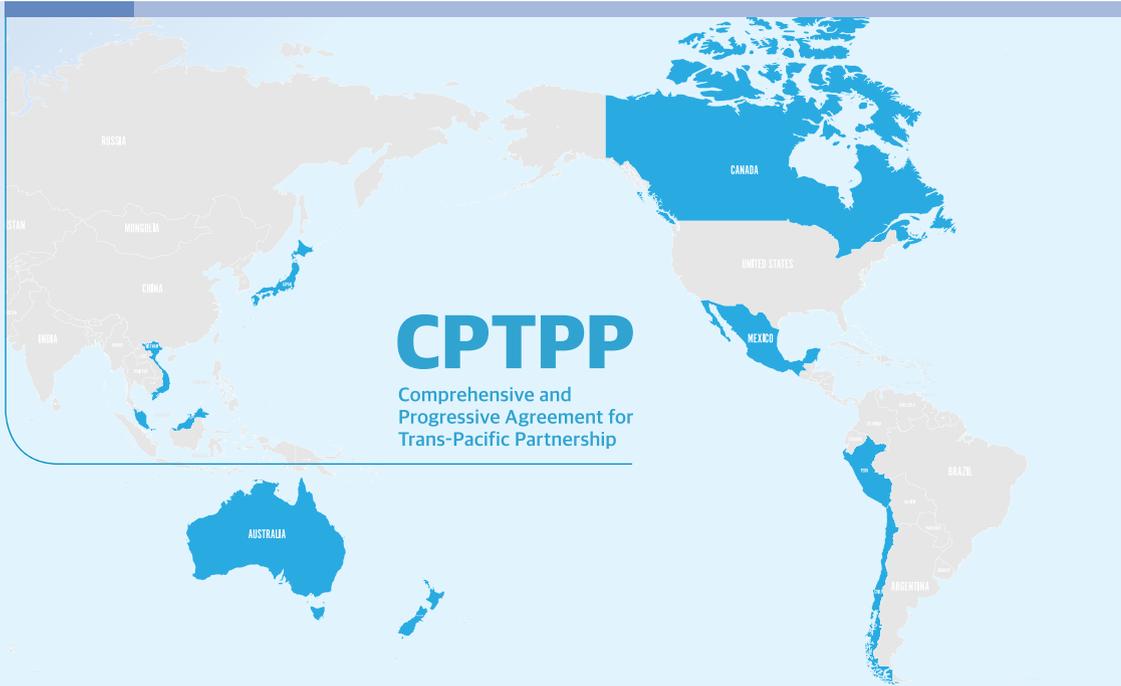
이번 간담회는 ‘CPTPP의 미래,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CPTPP를 비롯한 아·태지역 내 통상 환경 변화 양상 및 전망, 그리고 역내 주요 통상강국으로서 한국의 대응방향에 관해 주요국 통상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태지역 양대 메가 FTA인 CPTPP와 RCEP, 그리고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간 디지털 협정인 DEPA 등 역내 통상질서 변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은 “RCEP 발효 준비와 함께 DEPA 가입을 추진하는 등 역내 통상 리더십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략적 가치가 큰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이 CPTPP에 적합한 후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적극적 검토와 진지한 가입신청 고려를 제안하였다.

Wendy Cutler 미국 Asia Society 부회장은 “영국, 중국, 대만의 가입신청으로 CPTPP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한국도 CPTPP 가입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Deborah Elms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re 대표는 “한국이 이른 시일 내에 CPTPP에 가입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가입 의사 표명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클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Jeffrey Wilson 호주 Perth USAsia Centre 선임 연구원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무역을 통한 협력의 지지국인 한국의 CPTPP 가입은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Stephen Woolcock 영국 런던 정경대 교수는 “향후 CPTPP가 보다 포용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CPTPP 가입 검토에

관한 각계의 의견과 입장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아-태지역 통상 여건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통상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CPTPP(11개국) :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5개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3개국)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계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1년 10월 26일(화) 화상으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선언식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17년 신남방정책 선언 이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0년 11월 서명), 인도네시아('20년 12월 서명) 등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등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의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³⁾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타결선언

Conclus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서명식

Signing Ceremony of the Korea-Cambodia FTA

3) 아세안 4대 교역 대상국과의 양자 FTA 체결 현황('20년 기준) :
(1위) 베트남('15년 발효) (2위) 싱가포르('06년 발효) (3위) 말련('19년 협상개시) (4위) 인니('20년 서명)

한-필리핀 FTA 추진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년 10월 26일(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19년 4월 한-필 통상장관간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한-필 양자 FTA 추진 합의 후,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19년 6월 협상을 개시하였다.

이후 2년 4개월간 5차례 공식협상⁴⁾, 수석대표 및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 되는 '21년 10월 26일에 상품, 원산지, 통관, 경쟁,

경제협력 등 12개 챕터 및 시장개방에 합의하여 최종 타결성고를 도출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필리핀 FTA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양국이 함께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백신,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해외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산업인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희소금속, 스마트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하였다.



①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 선언식(화상) 개요

- 일시/장소 : 10.26.(화) 09:00 / 소공동 롯데호텔
- 참석자 : 우리측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필리핀측 라몬 로페즈 통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 내용 : 협상 타결 선언 및 공동 선언문 서명

②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화상) 개요

- 일시/장소 : 10.26.(화) 10:00 / 소공동 롯데호텔
- 참석자 : 우리측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캄보디아측 판 소라삭 상무부 장관 등
- 내용 : FTA 협정문 서명

4) (1차) '19.6.4~5 (2차) '19.7.15~17 (3차) '19.8.12~14 (4차) '19.9.10~13 (5차) '20.1.29~31

ISSUE IN ISSUE ①

2021년에 새로 조정된 수출입 시 법정검험검사 품목 리스트는?

해관 필수검사 대상에서 HS 10단위 기준 266개 품목을 삭제 혹은 추가



‘법정검험검사목록(法檢目錄)’과 ‘법정검험검사(法檢)’

‘법정검험검사목록’은 수출입 시 해관이 반드시 검사하도록 지정한 품목 리스트와 법률 및 행정법상 해관의 검사를 받도록 지정한 수출입 품목 리스트를 일컫는다.

아울러 수출입 과정 중 해당 품목에 대해 해관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법정검험검사’라고 한다.

2021년 6월 1일부로 해관총서는 《검험검사 필수 수출입 상품 목록 조정에 관한 공고(關於調整必

須實施檢驗的進出口商品目錄的公告)》를 발표했다.

해당 공고를 통해 법정검험검사목록 중 HS 코드 10단위 기준 총 266개 품목을 추가 혹은 삭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입 시 검사 대상품목 중 234개를 삭제(HS 코드 10단위 기준)했고, 수입 시 검사 및 수출 시 검사 대상품목은 각각 8개, 24개를 추가했으며, 6월 10일부로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삭제 품목

수입 시 필수 검험검사가 삭제된 전문기계설비, 금속 재료, 화학공업제품, 액세서리 등 234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관이 더 이상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34개 제품 중 고체폐기물 HS 코드는 52개, 금속 재료 48개, 전문기계설비 89개, 전지 27개, 오디오·

비디오설비 10개, 화학공업제품 5개, 액세서리 3개가 포함됐다.

검사목록에서 삭제된 주요 사유로는 ▲해당품목 수입의 원천적 금지에 따른 검사 불필요, ▲품목 취급 시 낮은 위험도·리스크에 따른 검사 불필요 등이 있다.

내용	해관감독관리 조건 'A' 삭제	해관감독관리 조건 'A' 추가	해관감독관리 조건 'B' 추가
범위	HS 코드 10단위 234개	HS 코드 10단위 8개	HS 코드 10단위 24개
유형	기계·전자제품, 금속재료, 화학공업제품, 액세서리 등	재생원료 등	강철괴, 잉곳 등

자료: 중국해관총서

주) 관리감독조건 "A"는 수입 시 검험검역, "B"는 수출 시 검험검역을 의미





추가 품목

2020년 말, 생태환경부, 공업 및 정보화부, 상무부, 발개위, 해관총서 등 부처들은 고체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재생금속원료 8개 항목에 대해 수입 시 품목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재생금속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수요도 확대되는 가운데 재생금속은 에너지절감, 절수, 고체 및 이산화유황 등 폐기물 배출감축 등 면에서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법정검험검사 범주에 포함된 재생철강, 황동, 구리,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등 품목은 관련 국가표준⁵⁾에 따라 검사 및 감독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출 시 품목검사가 의무화된 품목은 강철괴, 무쇠 등 가공되지 않았거나, 기초가공만 된 철강제품 24개(HS 코드 10단위 기준)로 구성돼 있다.

2021년 4월에 발표된 《일부 철강제품 관세조정에 관한 공고(關於調整部分鋼鐵產品關稅的公告)》에 따라 5월 1일부터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관세가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관세가 조정된 제품의 상당수(HS 코드 기준)가 검사가 의무화된 품목 목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7월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발표한 《철강 수출관세 환급에 관한 공고(關於取消鋼鐵出口退稅的公告)》에 따라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수출세 환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책과 조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중국 철강제품 가격경쟁력 약화 및 그에 따른 수출감소 우려를 표명했으나, 제품 품질관리 및 시장 질서 관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 GB/T39733-2020재생철강원료(再生钢铁原料), GB/T38470-2019재생황동원료(再生黃銅原料), GB/T38471-2019 재생구리 원료(再生銅原料), GB/T38472-2019재생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원료(再生鑄造鋁合金原料) 등



법정검험검사 및 목록조정에 따른 Q&A

1. '법정검험검사'는 '법정검험검사목록'의 품목에만 국한되는가?

《수출입상품검험검사법(進出口商品檢驗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관은 목록에 나열된 수출입 상품과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해관이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기타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즉, 해관이 의무적으로 검험 검사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의 목록은 '법정검험검사목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등 법률이나 법규가 규정한 품목에 대해서도 해관은 검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목록에서 삭제된 수입상품은 앞으로 해관이 더 이상 검험검사를 안하는지?

해관은 기타 법규정에 따라 '법정검험검사목록' 이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進出口商品檢驗法 實施條例)》 제4.2조는 해관이 법정검험검사목록 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선별검사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상품 선별검사 관리방법(進出口商品抽查檢驗 管理辦法)》 제3조는 안전, 위생, 환경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검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소비자의 민원이나 반품이 많은 제품, 품질문제가 발생했던 제품, 새로운 기술요구가 있는 제품 등에 대해 예외주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3. 법정검험검사 대상인 수출입상품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進出口商品檢驗法 實施條例)》 제16조에 따르면 법정검험검사 대상 수입상품의 수취인이 계약서, 영수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빙 및 비준문서를 구비하고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통관 후 20일 내 수취인은 관할지 해관에 검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상품의 경우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출상품 선적인은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기한 내에 해관총서에서 지정한 지점에 신고 및 검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4. 해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법률·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 제외, 《수출입 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19조 및 20조에 근거하여 법정검험검사를 진행한 수입상품이 사람·재산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호 등 문제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관은 당사자에게 해당품목의 소각을 지시하거나 반송 처리한다.

라벨, 포장 등 문제나 방역·훈증 미 실시 등 기타 사유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관의 감독 하에 보완처리한 후 재검사를 거쳐 판매 혹은 사용할 수 있다.

수출상품의 경우실시조례 제27조 및 28조에 따라 실시된 검험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시 해관의 감독 하에 보완 처리한 후 재검사를 거쳐 수출할 수 있다.

보완작업이 불가하거나 보완 후 검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출이 금지된다.



평가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266개에 달하는 HS 코드의 품목이 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추가됐으며, 삭제가 234개로 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돼 검사대상 목록에 남겨둘 필요가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적지 않은 품목이 의무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출입 장벽이 일부 제거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반대로 일부는 오히려 의무검사 대상으로 포함되며 해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도 있다.

법정검험검사 대상품목이 관리감독을 거치지 않은 채로 수출입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입을 몰수하고 화물 가치의 5~2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Hoolinks 컨설팅(昊鏈咨询公司)은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이 검사를 회피·누락하여 위법행위가 구성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된 법정검험검사 품목 리스트를 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 추가된 품목들은 해관의 의무검사 시간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 중국해관총서, Hoolinks(昊鏈咨询),
KOTRA 광주무역관 자료종합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91329>)

양국간 협력 증진의 장이 될 수 있는 인도의 디지털화



디지털화는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였다. 14억의 인도 인구의 평균 연령이 27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도의 젊은 인구가 중심이 되어 급속한 디지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디지털 인디아”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 및 금융 지원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IT is India Tomorrow!

인도 정부는 인도를 디지털이 중심이 되는 사회와 지식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약 15억 달러(USD)에 달하는 규모의 Digital India 이니셔티브를 도입했다.

모디 총리는 출범 당시부터 디지털 혁신의 초점을 맞췄는데, 'IT(Information Technology) is India Tomorrow'('IT가 인도의 미래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대대적인 캠페인은 정부 주도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을 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영역의 기술 혁신을 위한 영역을 보다 넓혀 나갔다.

2020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이다.

인도의 디지털 기술 채택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속도로 증가했으며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교육 및 의료와 같은 서비스에서 디지털 기술 채택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수요 측면에서 기업은 고객 관리 및 비즈니스 운영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에 투자함에 따라 디지털 혁신은 계속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인공 지능 및 엣지 컴퓨팅과 같은 기술은 차세대 클라우드 아키텍처 및 서비스 설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현금에서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인도는 2020년 중국, 미국을 앞서 가장 많은 실시간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도의 실시간 결제 거래 건수는 255억 건으로 중국 157억 건, 한국 60억 건, 태국 52억 건, 영국 28억 건을 기록했다.

Paytm, PhonePe, Pine Labs, Razorpay, BharatPe 및 기타 B2C 및 B2B 디지털 결제 시장은 캐쉬백, 보상과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용량이 급증했다.

디지털 결제 금액이 2021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5% 증가한 535억 루피를 기록하였고, 이와 더불어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 결제도 급증하고 있다.

인도 IVCA(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Association)와 Ernst & Young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디지털 결제는 2025년까지 연평균성장률 CAGR 27%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는 2030년까지 전세계에서 3번째로 큰 온라인 소매 시장이 될 것이며 인도의 온라인 소매업체는 2030년까지 3,5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유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RedSeer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 상품 규모는 550억 달러로 추정된다.

향후 10년 동안 온라인 쇼핑객의 88%가 인도의 대도시가 아닌 작은 도시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병원에서 가정으로 : 의료의 패러다임 전환

인도에서는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과제이다.

인도의 국토 면적과 인구를 감안할 때 의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2020년 3월부터 500만명 이상의 인도인이 전자 의료 서비스에 접속하여 원격 의료가 활성화 되었고 온라인 의료 상담도 500% 증가했다.

이들 중 약 44%는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술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보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사점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은 이제 옵션이 아닌 기본 채널이 되었고 그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전자 제품 제조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전자 제조 산업에 획기적인 해였다. 'Atmanirbhar Bharat'의 후원하에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 촉진 계획(SPECS), 전자 제조 클러스터 계획(EMC 2.0)과 같은 정부 정책 지원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모든 부문의 디지털화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전 세계에 걸친 현실이며 5G에서 클라우드, 가상 현실 및 엣지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 및 소비자 기술은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의 강력한 하드웨어 제조력과 전세계에서 인정 받는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화 되고 있는 경제 변화에 맞춰 양국간 협력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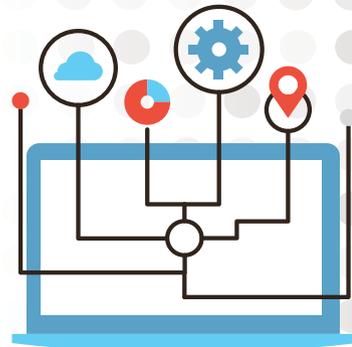
자료: IVCA, Ernst & Young, RedSeer, fortuneindia, moneycontrol, financialexpress, livemint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91328>)

멕시코 조세청, 물류증빙(Carta Porte)제도 신규 도입



2021년 5월 1일 멕시코 조세청(SAT)은 물류증빙서류 Complemento Carta Porte(CCP, 이하 CP)를 의무적으로 징구하는 신규 규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물류증빙서류 도입의 취지는 멕시코 내 모든 물류의 합법성과 투명함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물류증빙서류에는 해당 물류의 출발지부터 이동 루트, 도착지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운반 물류사의 정보를 입력해야한다. 해당 서류와 함께 사례별로 멕시코 전자영수증을 함께 발행하여 물류 운반 시 서면 혹은 디지털 버전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멕시코의 전자영수증(CFDI, Comprobante Fiscal Digital por Internet)

멕시코 CFDI는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된 디지털 영수증의 개념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구매 건에 대한 내용증빙이다.

구입시기, 금액, 부과 세금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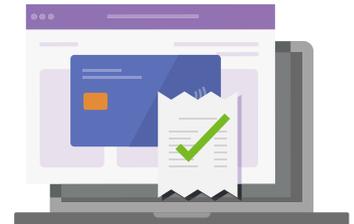
CFDI는 총 6가지 종류가 있으며, 1) 판매(Ingreso) 2) 환불(Egreso) 3) 이동(Traslado) 4) 수령(Recibo) 5) 급여(Nomina) 6) 매출채권(Retencion,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건)으로 구분된다. 전자영수증 발행시 멕시코 조세청에 등록된 자사의 전자서명이 매번 기입되어야 한다.

현재 멕시코 조세청의 제도 도입 일정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부로 CP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멕시코 조세청은 운송 방식별 도입 취지를 나열하며, 자국에서 발생하는 불법 물류이동을 단속하고 합법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물류 출발지 및 도착지를 확인해 물류이동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요 이동 경로의 보안을 확보할 예정이다.



[물류증빙제도 도입 일정]

구분	일자	내용
1	2021년 5월 1일	국세청 물류증빙제도 Carta Porte 도입 발표
2	2021년 6월 1일	6월 1일부 선택적 발효(의무사항 아님)
3	2021년 9월 21일	선택적 발효 연장
4	2021년 12월 1일	12월 1일부 Carta Porte 제출 의무사항
5	2022년 1월 1일	Carta Porte 제출 의무 및 위반시 벌금 부과

자료: SAT

[운송 방식별 도입 취지]

형태	취지	비고
육상 (자동차, 트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로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법 물류의 자국 유입을 차단하도록 한다 - 물류 품목, 출발지, 이동경로 및 도착지, 소유주, 중간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한다 	(공동) 합법적인 물류이동 시스템 구축
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경로로 도착하는 물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다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으로 유입된 물류이동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다 - 항공 서비스 이용자 및 물류 운반자(대리인) 데이터를 수집한다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경로로 이동하는 물류 운반량 및 빈도를 파악해 철도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자료: SAT

물류증빙서류 세부사항

12월 1일부 의무 도입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시행 세칙 관련 멕시코측의 정보가 부족하여 시행 착오가 예상된다.

멕시코측에서 현재까지 물류증빙서류에 대해 공유한 사안은 아래와 같다.

(발행 대상자) 물류의 이동을 전담하는 1) 물류 에이전시 2) 판매자(직접 이동)가 물류를 육로, 철도, 해상, 육상으로 운반 시 물류증빙서류(CP)와 전자 영수증(CFDI)을 발행해야 한다.

(발행시점) 물류증빙서류(CP)는 물류이동 실시 이전에 발행되어야 하며, 물류 운반시에는 디지털 혹은 인쇄본을 지참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운반자 및 도착지의 수령자가 모두 사본으로 지참하고 있어야 한다.

이동수단이 변경될 시⁶⁾에는 물류증빙서류(CP)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 지참해야 한다.



6) 이동수단 변경 시기마다 CP의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야함을 의미함

물류증빙서류(CP)는 물류이동에 대해 의무적으로 징구되며, 전자영수증(CFDI)의 발행은 물류 운반 케이스별로 상이하어 전자영수증 판매 혹은 이동 건으로 구분된다.

1) 전자영수증(판매/Ingreso)의 경우, 물류 서비스에 대한 비용과 재화의 금액(가치)을 포함하고 있다.

2) 전자영수증(이동/Traslado)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류비가 결제된 이후에 이동 및 운반에 대한 증빙이므로 영수증상 금액은 “0” 혹은 재화 금액만 기입된다.

(내용) 물류증빙에는 품목, 이동 수단, 전자영수증 종류, 출발지, 도착지, 운송인, 수하인, 세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품목 관련 상세한 정보(수량, 종류, 브랜드 등)를 포함해야 하며 가격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발행절차) 물류증빙 발행 절차는 물류이동 사전에 서비스 고객으로부터 재화 관련 정보를 수령하여

전자영수증을 발행 및 물류증빙을 작성하는 형태다.

서류 발행 후 물류이동을 실시해야 하며, 이동 시 관련 감시 포인트에서 서류를 요구,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감시 기관) 물류이동서류 관련 아래 기관들은 서류를 검토하거나 물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1) 멕시코 연방 보안 경찰(Guardia Nacional)
- 2) 멕시코 교통부
- 3) 멕시코 위생 담당 기관
- 4) 멕시코 연방 및 주정부별 관세청 검문

(벌금) 물류이동 시 물류증빙서류(CP)와 전자영수증(CFDI)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760페소에서 14,710페소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류 발행을 연속적으로 누락한 것이 적발될 경우 3~15일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물류증빙서류 세부사항]

의무 발행 대상자 및 내용	물류증빙 및 전자영수증 종류	발행시기	운송 형태
물류 운반자 (물류비와 재화에 대한 비용이 사전에 집행되지 않은 경우, 전자영수증 지출 건으로 발행)	CFDI Ingreso + Carta porte	물류이동 시작 이전 발행	육상, 철도, 해상, 항공
물류 운반자 (물류비와 재화에 대한 비용이 결제된 경우)	CFDI Traslado + Carta porte		
물류 운반자가 판매자이며 구매자에게 직접 운반 시	CFDI Traslado + Carta porte		

자료: SAT